

#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法律 第7836號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동조제2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제16161호

관

부

2005.12.31. (토요일)

③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 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55

2. 2007년 : 100분의 60

3. 2008년 : 100분의 65

4. 2009년 : 100분의 70

5. 2010년 : 100분의 75

6. 2011년 : 100분의 80

7. 2012년 : 100분의 85

8. 2013년 : 100분의 90

9. 2014년 : 100분의 95

⑥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 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300”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ㄱ

제17조제3항 중 “제7조제2항제1호”를 “제8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수준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고, 여러 채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12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한 덕 수  
 장 관

◎法律 第7837號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리.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제12조제4호의3에 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